

제324회 임시회
2013. 10. 17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10. 17(목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종성 의원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3년 9월 16일
-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2013년 10월 8일

-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종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3)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규정 신설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내용 반영
 - '자활공동체'를 '자활기업'으로 변경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)

-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(2012.2.1.) 내용에 따라 변경된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5조, 제8조, 제9조, 부칙 제2조 중 ‘자활공동체(가)’를 ‘자활기업(이)’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최대 3회까지(최장 6년) 연장해 줄 수 있다.

⑤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이차보전)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%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⑤ -----
자활기업 -----

제9조(이차보전) ① 자활기업이

② -----
자활기업 -----

③ -----
----- 자활기업이 -----

제11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

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

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부칙(2012. 7. 16 조례 제3482호)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용자받은 자활공동체 등의 용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(2012. 7. 16 조례 제3482호)

제2조(경과조치) - - - - -
- - - - -
자활기업 - - - - -
- - - - -

관 계 법 규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(자활기업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상의 사업자로 한다.

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,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- 2. 국유지·공유지 우선 임대
- 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- 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- 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2.2.1]

부칙 <법률 제11248호, 2012.2.1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의2제1항제3호, 제15조의2제1항제5호, 제15조의3,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